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정일자 2022. 12. 0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,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그 외 관련 법규(이하 "관련법규"라 한다)와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"수수료"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판매회사 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신탁업자 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성과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

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설명 의무) 회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투자광고)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,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,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8조(공시 및 통보)

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